

19세기 개항이후 韓·日 服飾制度 비교*

이 경 미 · 이 순 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명예교수*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Costume Systems since Port Opening Treaties in Nineteenth Century

Kyung-Mee Lee · Soon-Won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i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10. 5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Korean and Japanese costume systems and to compare both of them on the process of adopting the western-originated costumes. The consequenc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osun and Japan started simplifying the traditional clothings, introducing the western clothings and executed the ordinance prohibitory topknots through reforming costume systems since Port Opening Treaties in 19th centry.

Japan performed the reformation of costume system effectively through the grand campaign of social reforming enlightenment by Meiji Government.

Meanwhile in Korea, there were a continual repetition of adoption and rejection in the reformation of costume systems because of strong cultural self-esteem and competition of foreign Empires.

However, western-originated cultural perspectives brought the strong self-devaluated view on their own cultures to both countries. And that's the first cause of substitution of western clothings for ordinary ones in both nations.

Key Words : 복식제도, 복식의 간소화, 양복의 도입, 단발령

Costume System, Simplification of clothing, Introduction of western clothing,

The Ordinance prohibiting topknots

* 본 논문은 2000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속 생활과학연구소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I. 서론

19세기 우리 나라와 일본은 외부의 강압에 의해 개항을 하게 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오랜 동아시아의 국제평화 속에서 내치에 전념하던 두 나라에게, 우월한 군대를 앞세우고 통상을 요구해 온 낯선 세계를 향한 개항은 자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조선과 일본 역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여 서양으로부터 기술문명과 제도를 도입하는 전면적인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 服飾制度 역시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복식이 간소화되고 단발령이 시행되었으며 양복이 도입되었다. 복식제도에 있어서 이는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동아시아에서 세계는 中華와 夷狄으로 구분되었고 그들간에는 禮로써 대우하는 질서로 유지되었다. 19세기 개항을 전후하여 조선과 일본은 그들 스스로를 中華로, 서양을 洋夷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개항이후 스스로 洋夷의 복식을 제도로서 받아들인 것이므로 이는 매우 모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서양 세력의 성격 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9세기 개항이후 韓·日 服飾制度 개혁과정을 서양의 도래와 이에 맞선 우리 나라와 일본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하여 개항을 전후한 시대상황을 고찰하고, 두 나라의 복식제도 개혁과정을 각각 살펴본 다음 이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양과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는 19세기 개항으로부터 文武官服이 완전히 서구식으로 바뀌는 시기까지로 하였다. 우리 나라는 1876년의 개항이후부터 1900년까지, 일본은 1854년의 개항으로부터 1890년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시기의 외교사절과 유학생들이 문화적 차이를 가장 먼저 그리고 절실하게 체험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복식개혁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착안하여 이들의 복식 변화를 포함시켰다. 여성복의 변화는 대상시기의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기존복식에 대한 개량 논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본 연구

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제외하였으나, 일본의 鹿鳴館 복식은 개혁의도가 적극적으로 개입된 중요한 예로 보아 포함하였다.

연구자료로, 우리 나라는『朝鮮王朝實錄』『修信使日記』『勅令存案』『勉菴集』『梅泉野錄』『甲申日錄』등 당시의 저술을 일차자료로, 이 시대에 대한 연구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다. 일본은 자료 접근이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주로 서울대학교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92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출판된 조선총독부 자료를 번역하여 참고하였다. 특히 明治時代の 議案錄·신문·잡지를 집성한 『幕末明治過渡期の風俗』과 『明治編年史』는 자료집성집이므로 부족하지만 일차자료로, 『日本洋服沿革史』를 비롯하여 『服飾史』 또는 『風俗史』의 書名을 지닌 서적을 이차자료로 활용하였다.

II. 상반된 세계관의 충돌

1. 개항이전 韓·日의 세계 인식 : 자기 중심적 中華意識

전통적으로 儒敎圈 국가에서 세계를 보는 관점은 華夷論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화이론은 인륜과 도덕을 지키는 유교문화를 갖고 있는 존재를 中華, 그렇지 못한 존재를 夷狄으로 구별하는 성리학적 명분론이다. 그러나 온 세계를 단순히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 인식한 것은 아니고 중앙지역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졌는지에 의해 단계적으로 구분이 있는 사고체계였다.¹⁾ 이 단계에 의하여 제후국의 조공횟수가 결정되었고 조공횟수의 많고 적음은 곧 문화수준을 의미하였다. 조공국의 국왕은 중국에 의해 冊封을 받음으로써 대내외적인 명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조공과 책봉이라는 序階적인 질서는 禮로써 유지되었다.²⁾ 화이론에서 중화는 지리적, 민족적, 문화적인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으나 정통성을 보유한 중화의 실체가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기 때문에 문화적인 의미가 가장 컸다.³⁾ 특히 북방오랑캐인 여진에 의해 동아시아 질서가 파괴된 17세기는 실체로서의 중화가 사라졌고 중화문화질서

가 붕괴된 상황이었다. 이에 조선은 그 후계자로서 중화문화를 부흥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와 사명을 가졌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여 이전시기의 小中華意識을 발전시켜 조선이 곧 중화라는 조선중화주의를 정착시켰다.⁴⁾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성립된 토쿠가와 막부[德川幕府]시대에 주자학을 통치이념으로 수용하고 육성하였으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국가와 사회로의 침투의 양과 정도가 훨씬 덜하였다.⁵⁾ 17세기를 지나면서 이미 중국 중심적 사유체계는 해체하기 시작하였고⁶⁾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일본 문화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욱 유행하게 되었다. 이들 역시 조선과 마찬가지로 중국인은 淸朝의 지배하에 있고 이적의 습속을 받아들였으므로 일본이 오랜 중화의 의복(문물)을 보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2. 서양문명의 전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통하여 근대화에 일찍 성공한 서양은 19세기가 되자 조선과 일본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오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아시아 국가들과 조약을 맺을 때 유럽 公法이라는 '문명국간의 법'에 의거하여 문명국 기준⁷⁾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半문명국 혹은 야만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야만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침탈과 점령의, 半문명국에 대해서는 불평등조약의 근거로 삼았다.⁸⁾ 이 기준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체제에 있던 지역들은 문명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서양세계에 대한 쇄국정책을 고수하고 있던 조선과 일본이 이들 서양 국가들과 근대적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식민지가 될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의미하였다.

華夷論에 의거하여 스스로를 華로 여기고 있던 조선과 일본이 문명과 야만의 척도로 국제관계를 재편성해 가는 서양과 만나는 시기가 바로 개항이었다. 이와 같은 극과 극을 달리던 상반된 두 세계관이 충돌하여 타협한 최초의 사건이 불평등 조약. 다시 말해서 동양의 華가 서양의 야만이 되는 것이었다. 일본과 조선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3. 조선과 일본의 개항

일본은 1854년 미국의 해군제독 Perry에 의하여 美日和親條約을 조인하고 시모다[下田]·하코다테[箱館]두 항의 개항 등을 약정하였는데, 이 조약은 치외법권·협정관세율·최혜국 대우를 주축으로 하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천황의 칙허 없이 막부측에서 개항을 진행한 것이었으므로 천황뿐 아니라 중하층 公卿을 중심으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이는 反幕府세력에 구실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⁹⁾ 이후 일본에서는 본격적으로 尊王洋夷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倒幕운동으로 이어져 1867년 明治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다. 외국과의 조약개정을 목표로 하여 성립된 명치정부는 시급한 불평등 조약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王政復古와 尊王攘夷의 시대에 오히려 서구의 문명사회를 모방하는 文明開化를 전면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1887년 외상 이노우에[井上]는 일본을 歐洲의 신제국으로 만들어 조약상 태서각국과 동등한 지위에 오를 것을 선언함으로써¹⁰⁾ 歐化主義가 당시의 목표였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복식제도 역시 서양과 가까워지기 위한 개혁으로 진행되게 된다.

조선은 1876년 일본에 의해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조선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지식인들 사이에서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을 계승하여 개화파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개항 이후 문물시찰을 위한 신사유람단과 외교를 위한 수신사로서 일본을 다녀온 경험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1882년 壬午軍亂으로 인해 대원군이 재집권하면 서부터 조선은 청나라에 대하여는 조공국으로서, 그 밖의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근대 국제법 질서하에 놓이게 된 '兩截體制'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조선이 사대질서와 근대 국제법 질서가 동시에 지배하는 독특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청은 개화파의 활동을 탄압하였고 이러한 불합리한 질서를 타파하기 위하여 급진개화파의 갑신정변(1884)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실패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향하에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인 갑오경장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는 정치·사회·경제면에서 전반적이

고 광범위한 개혁이었다. 그러나 명성황후 시해와 이후 발표된 단발령으로 을미의병(1895)이 발생하자 또다시 개혁은 중단되고 고종은 俄館播遷을 단행하였다. 1897년 환국한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올라 光武改革을 진행하였으나 개항이후 계속된 국내의 혼란과 서양 열강 및 청·일의 각축 등으로 결과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외세로부터 자주독립 유지라는 면에서 大勢를 빼앗기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19세기 개항에 직면하여 爲政斥邪思想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는 조선이야말로 중화문화를 이룩하여 그 이념을 실현하고 있으며 예의 법도와 의관문물로 대표되는 중화의 핵심이 보존되어 있다는 자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정척사사상은 서구 문명권의 변방으로 전락할 수 없는 자존심으로 작용하여¹²⁾ 개화정책 반대 상소, 왕비시해와 단발령 반대 의병항쟁으로 나타났고 의제 개혁 역시 반대하였다. 기존의 문화를 야만으로 여기는 서양의 문명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문화자존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주장 역시 의미 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Ⅲ. 19세기 개항이후 일본과 조선의 服飾制度 개혁

본 장에서는 19세기 개항이후 일본과 조선의 복식제도 개혁과정을 시대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19세기 개항이후 일본의 服飾制度 개혁

1) 德川幕府 末期 服飾制度 개혁

① 부분적인 양복도입과 기존복식의 간소화

幕末 개항이 이루어진 후 양복을 착용한 사람들은 주로 개항장 부근에서 일하는 군함에 오르는 사람, 서양식 兵隊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이었다. 이들은 개인적 호기심의 차원에서 양복을 부분적으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막부측에서는 異風の 복장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금지령을 계속 내리지만 결국 이러한 현상을 제어할 수 없어서 이를 공인하게 된다.¹³⁾ 그러나 공식적으로 아직은 양

복을 全裝으로 착용한 것은 아니고 양복식 바지에 하오리[羽織]를 입고 머리는 마계[髷: 일본식 상투]를 하였으며 太刀를 들고 草鞋를 신는 식으로 和洋이 혼용된 형태였다.

文久2년(1862) 막부는 여러 大名의 압박에 의해 幕政을 개혁하였는데 이때 이루어진 복식개혁에 의하여 禮服, 平服이 간이하게 되어 鬘斗目과 長袴가 폐지되고 평복은 이후 羽織小袴를 이용하게 되었다.¹⁴⁾ 그러나 이는 다음해 정변에 의해 복구령이 내려짐으로써 폐지되게 되었다. 일본에 있어서 명치 정부가 수립되기 전 이루어진 복식제도의 개혁과 번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막말 복식제도 개혁의 내용은 부분적인 양복의 도입과 기존복식의 간소화로 요약된다. 양복은 개항장 주변의 상인, 신식군대의 훈련병, 신인 武家, 町人 등이 유행과 편리를 추구하여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막부가 제한적으로 公許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무가계급의 예장이었던 上下類를 폐지하고 略裝인 하오리[羽織]를 채택하는 기존 복식의 간소화 시도가 있었다.

② 외교사절 및 유학생의 복식

幕末 첫 번째 외교사절은 萬延元년(1860)에 미국과의 조약을 批准교환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당시 이들은 狩衣로 정장을 한 차림이었고 돌아올 때까지 일본의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¹⁵⁾ 그러나 明治4년(1871) 견미사절단 특사인 이와쿠라[岩倉具視]는 출항시에는 丁髷·紋付羽織袴차림이었으나 귀국시에는 완전히 머리를 자르고 양복을 입은 상태로 변신하였다고 한다.¹⁶⁾ 劉香織(1990)은 그가 단발양장을 한 것은 그의 자랑스러운 일본식 외모가 구라파에서는 오히려 무시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약개정을 위한 사절로서 국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였다.¹⁷⁾ 이들 두 사절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막말에는 일본의 풍습에 대한 자부심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으나, 명치초기의 사절은 서양식 문명관으로 스스로를 보기 시작하여 자신의 풍습을 버리고 서양의 것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막부말기 해외로 나간 유학생은 막부로부터 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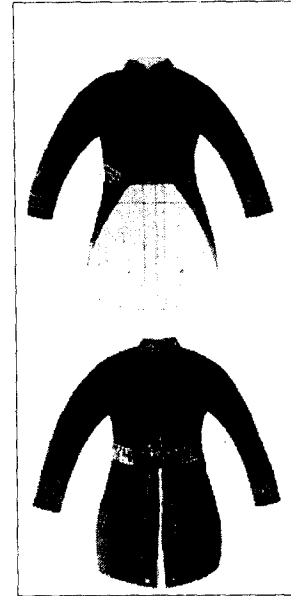
적으로 파견된 화란 유학생과 藩으로부터 파견된 密出國 유학생이 있었다. 막부는 유학생을 파견하면서 그들이 서양의 풍속에 심취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本朝의 풍속을 바꾸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맹세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화란에서는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머리는 모자로 감추고 옷은 서양 옷으로 바꾸어 입는 식의 중간책을 취했다가 일본에 돌아와서는 종전대로의 생활환경으로 회귀하였다.¹⁸⁾ 이들과는 달리 막부의 해외파향 금제를 깨고 長州 藩과 薩摩藩에서 영국으로 密出國한 유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출항전 이미 단발하고 양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劉香織은 막부의 화란 유학생은 선택된 자로서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무라이의 상징인 丁髷과 칼을 버리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들의 풍속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밀출국 유학생은 밀항자라는 대의명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분으로 인하여 머리를 자르고 양복을 입는 단호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대비하여 설명하였다.¹⁹⁾ 이들 외교사절과 해외 유학생들은 귀국 후 명치정 부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활약하였다. 특히 伊藤博文과 같은 밀출국 유학생 일행은 정부의 핵심멤버가 되어 서구화의 선봉이 되었다.

2) 明治政府의 服飾制度 개혁

① 명치정부 초기의 양복도입

명치정부가 수립될 당시에는 王政復古의 기치 아래 古制를 회복하려는 의지로서 고대 唐 복식 유입의 영향을 제거하고, 일본 민족 고유 복식만으로 복식제도를 개혁하였다. 그러나 明治4년(1871) 和洋服의 採否에 관하여 洋服堂과 和服堂의 대결은 끝에 결국 양복을 채용하는 쪽으로 귀결되어 "이제부터 散髮·制服·略服·脫刀의 뜻을 자유롭게 하라"는 명령과 함께 '服制一新에 관한 조칙'이 내려졌다.²⁰⁾ 明治5년 太政官達 제339호로는 공식적으로 대례복과 上下 일반예복이 양복으로 제정되었는데²¹⁾ 이때 제정된 대례복은 일명 연미복으로도 불리는 <그림 1>과 같은 형태이다. 명치10년(1877)에는 관리의 通常禮服이 제정되었다. 통상예복이라는 명칭은 이 시기에 처음 나온 것으로, 이는 中古 公卿의 朝服, 근세 막부의 士格 이상의 사람에 있어서 上下 또는

肩衣半袴에 해당하는 옷이다. 그 형태는 黑羅紗製의 연미복에 絹帽을 쓰는 것이었는데 제작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등관은 연미복 대신에 프록코트를 입어도 지장이 없고, 判任官 이하는 각 청 장관의 생각에 따라 하오리카카마(羽織袴)로 대응해도 된다고 하였다.²²⁾



<그림 1> 명치5년 奏任官 대례복

이와 같이 명치 초년에 복식제도의 체계가 대례복·통상예복의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영국식을 참작하여 만든 대례복과 구미사회의 禮裝인 연미복, 프록코트로 서양의 복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또한 대응할 수 있는 기존복식으로 지정된 하오리카카마(羽織袴)는 막말의 복식 간소화로 등장한 예복으로 이 시대에 완전히 정착한 것을 볼 수 있다.

② 散髮廢刀令

일본에서는 단발령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단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발은 서양식 군사 훈련을 받기 시작한 막부의 親兵부터 공식적으로 행해지다가 명치4년(1871) 정부가 公認하는 형식으로 『散髮廢刀隨意令』이 발표되었다. 단발하는 이유로는 또한 머리카락이 두뇌를 보호하

여야 하므로 이를 면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습관이 아닐 뿐 아니라 여러 외국을 비추어 볼 때 모발을 면도하는 것은 囚人뿐이고 원래 부자연스럽고 비경제적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²³⁾ 즉 정부의 단발령은 앞서 군인들의 단발과는 달리 실용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문명한 개화인들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단발이 개화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강력한 계몽에 대해 전국민 사이에서 반발이 많이 생기자 명치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강제책을 피하고 언론을 통한 계몽과 지방단위에서의 자발성을 이끌어냄으로써 효과를 올렸다. 명치편년사에는 단발에 대한 기사가 명치5년과 명치6년에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단발이 (서양)문명의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계몽하고, 각 지방별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²⁴⁾ 한편, 명치6년판『文明開化』에서는 “散髮이 된 것은 외국인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옛 풍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신화시대에는 散髮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도 명시대까지는 惣髮이었다가 만주족이 청을 세운 후부터 변발을 하게 된 것²⁵⁾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華夷思想과 서양의 文明觀이 섞여 있는 논리로, 머리를 면도하는 것을 천하다고 여기는 것은 서양의 文明觀이고 만주족의 辮髮을 그 예로 든 것은 전통적인 華夷論적인 사고 방식이다. 두 관점 사이에서 생기는 모순점, 일본은 華이지만 미개라는 것은 단발이 일본의 고유한 풍속이었다는 것을 이끌어냄으로써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단발을 자유의사에 맡기는 형식으로 명하였지만 각 지방마다 실천 내용으로는 과세를 부과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단발시키는 강제적인 내용까지 있었다. 세금을 징수하고 강제로 단발을 시키는 것을 보면 단발을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단발하자마자 모자를 사서 쓴다는 것로부터 단발자체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⁶⁾

한편, 일본에서는 단발령 못지 않게 廢刀令이 중요한 변화였다. 칼을 소지할 수 있음은 무사의 지위에서만 가능하므로 이는 신분상징성이 큰 것이었다. 개항을 계기로 서양인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게 되자 명치2년부터 폐도령에 대한 건의가 계속 되다

가 명치4년에 단발령과 함께 폐도령이 내려지게 되었다. 폐도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본혼의 상실, 신분 구분의 곤란함, 국가의 존립 위기 등의 이유를 들어 무사의 상징인 칼을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²⁷⁾ 이에 반해 폐도령을 시행하려고 한 사람들은 帶刀를 고루한 구습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미 사무라이를 필요로 하는 藩체제는 붕괴하였고, 사민평등이라는 기치 안에서 사무라이의 지위는 하락하였다. 이에 명치9년(1876) 태정관 포령으로 “대례복을 착용할 때와 군인, 경찰 관리 등이 제복으로 착용할 때 외에는 대도를 금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그 칼을 뺏는다”는 포고로 폐도령을 단호히 시행하였다.²⁸⁾

③ 歐化主義 시대의 복식제도

歐化主義 시대는 일본복식사에서 로쿠메이칸[鹿鳴館]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명치 17, 18 년으로부터 명치20년에 걸친 시기(1884~1887)로²⁹⁾, 명치정부가 조약개정을 위해 유럽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기이다. 이전에도 끊임없이 조약개정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구미 제국들이 일본은 국제적인 조약을 자발적으로 조인하고 실행할 국내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명자체도 야만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구미제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 급하게 외관의 歐美化를 도모하였다. 당시 이노우에[井上馨]외상은 로쿠메이칸[鹿鳴館]을 통해 일본인이 구미 여러 나라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내외에 과시하고자 하였다. 로쿠메이칸에 모인 사람들은 歐美식으로 남녀가 동반하고 양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특히 여자들은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버슬스타일(Bustle Style)의 드레스에 몸을 고정시키고 서양식 머리에 본넷을 쓰고 하이힐을 신었다.³⁰⁾ 그러나 상류사회의 지나친 歐化主義·洋風모방, 특히 외국인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한 무도회에서의 허영은 보수진영으로부터 빈축을 사게 되었고 구화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이어져 명치20년(1887) 9월 井上이 외무대신을 사퇴하고 급기야 조약개정을 중지시키게 되었다.³¹⁾

2. 19세기 개항이후 우리 나라의 服飾制度 개혁

19세기 개항이후 우리 나라의 服飾制度 개혁은 양복도입, 기존복식의 간소화, 단발령을 들 수 있다. 양복은 개항초기 군인과 외교사절의 착용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의 의제개혁으로 도입되었다. 기존복식의 간소화는 甲申·甲午·乙未 의제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1) 개항 초기 양복의 도입

① 양복 制服의 도입 : 軍服·巡檢服

개항이후 조선에서 최초로 도입한 양복은 군복이었다. 1880년 4월부터 일본군 교관에 의해 훈련을 받던 군인들이 1881년에 별기군으로 조직되어 서양식 군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들은 머리에는 갓을 쓰고 서양 바지를 입은 차림으로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다음 해인 1882년 임오군란의 발생으로 별기군은 해산되고 군란수습을 위해 들어온 청군이 淸制에 따라 親軍營을 신설함으로써 청나라 군복을 착용하게 되었다가, 이후 청병의 철수에 따라 고유한 복장으로 환원되었다.³²⁾ 갑오경장에 이르러 군복에 다시 양복이 채용되었고 이 때에 巡檢의 복장에도 양복이 도입되었다.³³⁾

이와 같이 군인, 경찰 등의 制服에 양복이 가장 먼저 도입되는 점은 일본과 공통되지만, 일본은 개인적인 호기심과 편리의 차원에서 먼저 착용된 다음 공인을 얻은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정부의 개화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외교대사 및 유학생의 양복 착용

개항 이후 최초의 외교사절은 개항직후인 1876년 4월에 강화도 조약의 細目을 협정하기 위해 일본으로 간 修信使 金綺秀 일행이다. 金綺秀는 『日東記游』에서 “일본의 의제는 모두 洋制를 좇아서 그것을 소위 公服이라고 하며, 私服에 오히려 舊制를 입고 있다”³⁴⁾고 적고 있다. 그는 조선의 복식제도를 명을 이어 내려오는 중화의 전통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으므로 일본의 복식개혁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2차 수신사 金弘集은 세계대세를 살피기 위하여

1880년에 일본으로 파견되는데 그 역시 일본에서 복식개혁 이후에도 옛날 풍속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보다 높이 샀던 것으로 보아³⁵⁾ 복식제도에 대한 생각에는 그다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882년 임오군란이 발생한 뒤 조선정부에서는 공사관 습격에 대한 사과를 위해 朴泳孝를 수신사로 하여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 때 수행원으로 김옥균, 서광범, 민영익이 함께 가게 되었다. 이들은 일본에 있는 동안 양복을 입게 되는데 그들이 양복을 입게 되는 과정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朴泳孝의 『使和記略』에는 일본 외무경 井上으로부터 천왕의 天長節(생일)에 초대받은 내용이 있다. 이 때 宮内卿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에는 참석할 때 천황을 배알하는 장소에서 大禮服을 입도록 지시하고 있고,³⁶⁾ 井上の 집에서 열리는 연회에는 小禮服을 착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³⁷⁾ 이틀 후인 9월 25일은 고종 왕비의 千秋節(생일)로, 조선으로부터 와 있는 40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례를 드리고 醉飽舞蹈를 하였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10월 3일에 각국 공사를 초청하여 연회를 열었다.³⁸⁾ 이상과 같은 일련의 외교 활동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박영효, 서광범, 김옥균, 민영익 등은 양복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궁내성 연회 및 외무경 官宅의 연회에서 대례복, 소례복을 입어야 한다는 언질이 9월 15일에 이미 예고된 바가 있었으므로³⁹⁾, 양복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었다. 따라서 박영효 일행은 이때 양복을 구하여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는 수신사 박



<그림 2> 1882년 박영효

영효가 1882년 일본에서 斷髮하고 양복을 입은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수신사 일행이 단발양장을 하였다면 이는 아마도 조선을 대표하는 외교 대사로서 책임의 발로였을 것이다. 이 당시 일본은 조약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유럽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조선은 입오군란으로 청의 내정간섭을 받게 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있을 구미제국들과의 문호개방에서 결코 유리한 입장이 아니었다. 또한 조선은 서양과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는 일본에 의해서도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으로부터 파견된 외교사절로서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고 문명국이라는 것을 일본에 와 있는 외국공사들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박영효는 이전의 수신사들과는 달리 양복을 전세계가 교류하는 새로운 시대에 외교를 위한 문명국의 복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일보 1972년 3월 14일 『世相달라졌다』에는 조선 최초의 양복 착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韓末의 각종 자료에 의하면 최초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개화파 거물 政客들인 김옥균, 서광범, 유길준, 홍영식, 윤치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들은 1881년 수신사유람단 또는 수신사절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갔었다...언더우드 목사는 이들 중에서 몸맵시가 제일 좋은 서광범을 데리고 동경이 이웃하고 있는 요코하마[橫濱]를 구경하러 나갔다...서광범은 이들 양복점에서 양복 한 벌을 사 입고 개화파 동료들에게 권했다. 김옥균, 유길준, 홍영식, 윤치호 등도 즉시 요코하마로 나가 양복을 모두 사 입었다...이들은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하이칼라를 하고 양복신사가 되어...조선으로 돌아가 정권을 잡을 경우 복식혁명을 일으킬 것을 서로 굳게 다짐했던 것이다...귀국했다가 김옥균, 서광범은 그들 일파 중 지체가 가장 높은 錦陵尉 박영효를 수신사로 만들어 1882년 이듬해 渡日, 박영효도 양복신사가 되었다.⁴⁰⁾

이 기사에서는 최초의 양복 착용자를 1881년 수신

사유람단의 일행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수신사유람단은 1881년 4월에서 7월까지 단 한번 일본에 시찰차 갔던 국정 시찰단으로, 이 글에 등장하는 홍영식, 유길준, 윤치호는 포함되어 있지만 김옥균, 서광범은 참가하지 않았다. 이들은 임무가 끝나자 1881년 윤7월에 귀국하였고 일행중 유길준, 윤치호는 일본에 머물러 유학하였다.⁴¹⁾ 또한 김옥균과 서광범이 渡日한 것은 그 최초가 1881년 12월에서 4월이었고 그 다음이 1882년 8월 박영효, 서광범, 민영익과 함께 간 수신사 일행으로서였다.⁴²⁾ 따라서 이 기사에서처럼 서광범, 김옥균, 유길준, 홍영식, 윤치호 등이 함께 요코하마에서 양복을 사 입었다면 그 시기는 김옥균의 첫 번째 渡日기간(1881년 12월~1882년 4월)중이었거나 수신사 박영효의 渡日기간(1882년 8월~11월)으로 추정될 뿐, 수신사유람단의 도일기간 중은 아닐 것이다. 또한 이들이 언더우드 목사의 권유로 양복을 사 입은 서광범을 따라서 즉시 양복을 사 입었다면 이는 당시 조선의 선비에겐은 상당한 모험이었을 것이다. 단지 일본의 눈부신 개화모습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중화의 표상으로 자부하고 있는 衣冠을 버리고 단발양장을 하였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생과 외교사절이라는 그들의 상징적 의미에 비추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들의 양복 착용시기가 수신사 박영효의 도일기간(1882년 8월~11월) 중에 이루어졌다면 외교상의 목적, 다시 말해서 미개하지 않은 자주독립국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김옥균의 첫 번째 渡日기간(1881년 12월~1882년 4월) 중에 이루어졌다면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당시 일본정부의 유학생에 대한 단발양장 권고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使和記略』에는 수신사 박영효가 조선으로 돌아오기 전에 외무경에게 부탁하여 한국인 학생의 일본 유학을 주선한 내용이 나온다.⁴³⁾ 이에 대해 이노우에[井上]는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수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그 頭髮, 의복을 다른 학생과 같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⁴⁴⁾ 10월 28일자 『自由新誌』에는 한국으로부터 유학 온 학생이 散髮洋服을 하고 사관학교에 입학한 기사를 실고 있다.⁴⁵⁾ 이들 이전에 이미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의 주선으로 戶山 사관학교

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유학하였는데 이들의 渡日은 1881년 말, 즉 김옥균의 첫 번째 도일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⁴⁶⁾ 앞에서 외무경의 요청을 통해 볼 때 이들 유학생들도 일본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양복을 착용하고 단발을 하였을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김옥균의 첫 번째 渡日기간인 1881년 12월에서 1882년 4월 사이에 일본 유학생들의 단발양장이 시작되었고, 1882년에는 일본에 간 외교대사(수신사)의 단발양장이 이루어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일본 학교에서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대사들은 외교상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단발양장을 하게 된 것이다.

1883년에는 미일수호조약의 비준을 위해 미국으로 보빙대사를 파견하였다. 이들은 미국 시찰 중에 양복한 벌칙을 사왔다고 하는데⁴⁷⁾ 대부분 이미 일본을 통하여 양복착용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미국에서의 양복구입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최초의 양복 착용자는 1881년부터 1883년 무렵 일본과 미국에 외교사절과 유학생으로 간 사람들 중에서 나왔다. 이후 이들은 개화정책 시행에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복식제도 개혁에도 앞장섰다.

2) 개항이후 조선과 대한제국의 服飾制度 개혁

① 甲申 衣制改革

개항이후 조선정부에 의해서 처음 이루어진 복식제도 개혁은 高宗21년(1884 甲申) 윤5월 24일의 갑신 의제개혁이다. 그 내용을 보면 관복은 黑團領으로 私服은 窄袖衣, 즉 두루마기로 변경한 것으로⁴⁸⁾ 이전 시기의 복식의 종류를 극히 간소화하고 복식의 신분상징성이 매우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식 개혁 조치가 내려지자 조정은 격렬한 찬반론에 휩싸이게 되었다. 『高宗實錄 권21』에는 전국 각지의 유생들로부터 들어온 상소문이 20건 정도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주된 반대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朝鮮中華主義로, 우리 나라의 의복제도는 中華의 古制를 준수하고 유일하게 漢·明의 遺制를 남기고 있으므로 주변국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것인데 새롭게 정한 복식제도는 古制의 근거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오랑캐인 일본의 것과 비

슷하니 해괴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상하 귀천의 구분이다. 袍의 소매가 넓은 것은 예의에 맞을 뿐만 아니라 귀천을 구분하는 것이었는데 모두 窄袖衣를 입으면 이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반대상소에 대하여 고종은 강경하게 물리치고 의복의 변경을 강행하였는데 이러한 고종의 의지는 바로 짧은 개화파 관료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梅泉 黃玿은 갑신 의제 개혁에 대하여 이 일로 인해 나라 안은 발각 뒤집혀지고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점차 서로 양보하여 그 제도를 조정과 민간에게 반포하였다고 적고 있다.⁴⁹⁾ 이와 같이 복식 간소화의 움직임이 다소 수그러지고 있던 시기에 급진 개화파가 주도한 갑신정변의 실패를 계기로 10월말에 “士庶의 私服은 편의에 따라 입으라”는 복식개혁 중지의 명이 내리자, 선비 및 서민들은 두루마기를 폐지하고 다시 옛날 의복을 입었다.⁵⁰⁾

② 甲午·乙未 衣制改革

고종31년(1894, 甲午) 다시 의제 개혁이 논의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갑오경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갑오 의제 개혁이다. 이때 이루어진 복식제도를 보면 “조정관리의 大禮服은 黑團領을 쓰고 進宮時의 通常禮服은 토산 紬布로 지은 周衣, 袴, 紗帽, 靴子를 착용할 것”으로 지시하고 있다. 형식상으로 대례복, 통상예복이라는 명칭을 도입한 것이었다. 갑오 의제 개혁 역시 반대상소를 불러 일으켰으나 갑신년과는 달리 사회 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이루어진 이유인지 강한 추진력으로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고종32년(1895, 乙未)에 이루어진 을미 의제개혁은 갑오년에 이루어진 의제개혁의 연속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대례복, 소례복에 흑단령을, 통상복에 周衣를 입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갑신년의 公服·私服으로부터 시작한 衣制의 간소화를 갑오년에는 대례복·통상예복으로, 을미년에는 대례복·소례복·통상복으로 정착시킨 것이다. 이 때에도 의관과 문물제도의 풍속을 지나치게 고친 결과 위아래의 구분을 뒤섞어 놓았다는 우려는 있었지만⁵¹⁾, “갑오년에 周衣승이 내렸을 때는 그 명령에 백성들이 즐거워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두루마기가 간편한 것을 좋게 여겼다”⁵²⁾는 黃玿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명성황후 시해사건(1895년 8월 20일)이 발생하였고, 이후 성급한 단발령이 내려졌다.

③ 斷髮令

단발령이 내려진 것은 고종32년(1895, 乙未) 음력 11월 15일(양력 12월 30일)이다. 조선의 단발령은 양력으로 12월 25일(음력 11월10일) '京城의 사정'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신문기사에서 "오는 1일 국왕, 대원군, 관리, 병사는 단발하고 인민은 자유롭게 할 것으로 내정함"으로 기록⁵³⁾된 것으로 보아, 건양 원년 1월 1일(음력 11월 17일)로 내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발령이 내려지기로 내정된 날로부터 이틀 전에 고종부터 강제로 단발을 당하였고, 官報에는 이 날자로 발표되었다.⁵⁴⁾ 관보에서는 위생에 이롭고 일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발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고종이 먼저 단발하였으므로 臣民된 도리로 일제히 단발할 것을 內部告示로 실고 있다. 또한 단발령과 함께 양복 착용에 대한 허가도 내리고 있다.⁵⁵⁾ 그러나 조칙의 내용과는 달리 단발은 강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단발령으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외국공사는 가마꾼이 나오지 않아서 설날 궁전에 가지 못했고⁵⁶⁾ 백성들은 자기 상투가 잘릴까 두려워서 문밖으로 나가지 않는 바람에 도성 안에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고, 목재, 토산물들이 들어오지 못하여 생필품의 가격이 심하게 치솟았다.⁵⁷⁾ 어떤 아버지는 그의 두 아들이 머리를 깎은 비탄과 치욕을 못 이겨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독일 공사 크리인은 외부대신 김윤식에게 각국 통상에 크게 방해가 되므로 단발령 강행을 금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⁵⁸⁾ 전체 나라가 단발령의 강행으로 인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정부에서 "세계가 왕래하는 때에 일신하여 부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하였으나,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함께 단발령에 반대하는 민심은 급기야 을미의병으로 이어졌다. 결국 고종은 단발령 시행 두 달 남짓 만인 건양 원년 2월 11일 俄館播遷을 단행하고 사실상 단발령을 철회하는 조칙을 내렸다.⁵⁹⁾ 곧 고종도 다시 結髮을 하였고⁶⁰⁾ 군인들도 다시 머리를 길러서 10월경 고종을 접견했던 비숍여사는 군인들

의 머리털이 귀 뒤에 헝클어진 채로 있어서 마치 야만인과 흡사한 인상을 주었다고 적으면서 강제적인 단발령에도 불구하고 '상투는 승리'했다고 하였다.⁶¹⁾

단발령은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복구되었지만 완전히 상투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배제학당 학생들, 순검, 관리, 一進會員 등에 점차 단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단발이 개화의 상징이라기 보다는 친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후에도 단발하는 사람은 의병의 표적이 되곤 하였다.⁶²⁾

④ 대한제국의 衣制개혁-양복 도입

고종은 俄館으로 처소를 옮긴 이후 개혁내각을 폐지하고 다시 의정부로 환원하였으며 "갑오경장 이후의 개혁된 규칙들은 舊章을 따르되 신규를 참작하여 편의에 관계한 것은 절충하고 반드시 행하는 데 힘쓰라."는 조칙을 내렸다.⁶³⁾ 복식에서도 관복이건 도포이건 또는 사복이건 간에 관리나 개인이든 더 이상 검은 색과 같은 통일된 색깔을 강요받지 않게 되었다.⁶⁴⁾ 아관파천 후 1년 만인 1897년에 고종은 열강과 독립협회의 반대여론으로 경운궁으로 환궁하고 그해 8월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光武라고 하고 10월에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이때부터 광무개혁이 진행되었는데 관복에 있어서 양복도입은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된다. 먼저 出疆하는 사신 복식에 양복이 도입되었다. 광무3년(1899) 8월 3일에 "외국에 가는 사신들의 복장은 우선 외국의 규례를 참작하여 고쳐 정할 것"으로 하였다.⁶⁵⁾ 이러한 반포 전인 6월 22일 「원수부 규칙」에 따라 고종은 大元帥로서 군정을 총괄하는 의미로 대원수복장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⁶⁶⁾ 광무4년(1890) 4월 17일에는 칙령 제13호로 勳章條例와 칙령 제14호로 文官服裝規則 및 칙령 제15호로 文官大禮服制式을 반포하였다.⁶⁷⁾ 대례복은 問安, 勳駕, 勳輿時 궁중에서 勅奏任官만 입는 것으로 하여, 영국 궁중예복을 모방한 일본의 대례복을 참작하여 연미형으로 정하였다.⁶⁸⁾ 소례복은 宮內進見, 공식적인 모임, 상관에게 인사할 때, 혹은 사사로이 서로 위로하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勅奏任官이 입는 것으로 하고, 유럽에서 시민의 예복으로 사용되는 연미복과 프록

코트(frock coat)로 정하였다. 통상복은 소레복과 같은 용도로 착용하며, 任進時, 집무시, 연거시에 착용하고 구미에서 시민의 평복으로 사용되는 세비로[背廣, sack coat]로 정하였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도 국제사회의 복식제도를 따르게 되었다.

IV. 개항이후 韓·日 服飾制度 개혁에 대한 비교

1. 19세기 개항이후 韓·日 服飾制度 개혁 내용

19세기 개항이후 韓·日 복식제도의 내용은 기존복식의 간소화와 斷髮令(일본은 斷髮廢刀令), 양복 도입으로 요약된다.

기존복식의 간소화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일본에서는 하오리[羽織]를, 우리 나라에서는 두루마기[周衣]를 들 수 있다. 하오리는 기모노[着物] 위에 입는 짧은 袍로, 처음에는 武士의 略裝으로 사용되었지만 幕末 明治 시대로 오면서 시민의 禮裝으로 착용하게 된 것이다.⁶⁹⁾ 두루마기는 조선시대 사대부 계급이 외출할 때는 道袍 아래에, 평일 집에 있을 때는 겹에 입던 袍로서, 서민계급은 이를 외출할 때 옷으로 입었다. 조선시대에 많은 분화를 보였던 일종의 便服袍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복제 개혁 이후 우리 나라의 袍는 두루마기 하나로 통일되었다.

단발령의 경우 일본에서는 斷髮廢刀隨意令으로 명치4년(1871)에 내려졌는데, 帶刀하는 풍습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명치9년(1876)에 다시 廢刀令이 내려지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종32년(1895, 乙未)에 내려졌으나, 백성들의 반대로 다음 해에 철회되었다.

양복의 도입에 있어서 두 나라에 도입된 양복은 당시 歐美의 여러 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도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대레복의 경우 연미형의 양복으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남아메리카제국, 이란, 태국 등에서 국왕의 궁정이나 대통령의 관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때에 입는 의례용 복장이었다.⁷⁰⁾ 또한 소레복과 통상예복으로 제정된 프록코트(frock coat)와 세비로[背光]는 歐美에서 각각 예복과 평상복이었다.⁷¹⁾ 이상으로 볼

때 19세기 개항이후 우리 나라와 일본은 복식제도의 개혁을 통해 전통복식을 간소화하고 양복을 도입함으로써 서양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복식제도를 따르게 되었다.

2. 韓·日 服飾制度 개혁 양상 비교

19세기 개항이후 韓·日 服飾制度 개혁의 내용은 양복의 도입, 기존복식의 간소화, 단발령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으로 근대국가를 먼저 성립시킨 서양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루어진 현상으로 당시 전세계적인 흐름이었다. 이들은 서양 중심적인 문명기준에 의해 그 밖의 나라들을 半문명 혹은 야만으로 규정하고 반문명국에 대하여 불평등 조약을 맺도록 하였다. 일본과 조선은 처음에는 자국의 문화를 야만으로 취급하는 서양의 시선에 당혹함을 느끼지만,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등한 외교를 위해서는 서구적인 문명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서구문화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개화정책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되어 있던 自文化에 대한 자부심을 깨고 서양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복식은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깊이 뿌리내려 온 생활문화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서 쉽게 착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조선과 일본의 위정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대적인 추세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복식제도 개혁을 진행하였다.

명치정부는 攘夷와 復古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왕정복고의 시기에 서양화를 주로 하는 文明開化는 모순이 아닐 수 없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명치정부에서는 먼저, 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게 된다. <그림 3>은 명치6년에 발행된 「文明開化」에 실린 그림으로, 당시 유행한 文明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서는 아프리카인[亞非利加人]을 미개한 사람으로, 막부시대 무사의 모습을 舊習을 지키는 보수적인 사람으로(舊弊의 일본인) 표현한 반면, 영국인[英吉利人], 러시아인[魯西



<그림 3> 개화인의 모습(명치6년)

亞人]과 함께 開化한 일본인을 문명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서양의 문명, 반문명, 야만의 논리와 같다. 다음으로, 양복이 일본의 옛 풍습과 같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일본의 원피스형 기모노[着物]는 2,3백년 정도의 풍습에 지나지 않고 上衣下裳(下袴) 형식, 곧 양복형이 일본 고유의 풍속이라는 것이다. 머리모양의 경우에도 丁髷은 청나라의 변발과 같이 머리를 면도하고 묶는 것이므로 비문명 국가에서나 이루어지는 풍속이지만, 이 역시 본래의 풍속은 아니라는 것이다. 양복이 고유한 일본의 복식과 같다는 논리는 1901년 소학교 교과서에 실린 神武천황의 모습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그림4〉) 여기에 추가하여 양복 및 단발이 지닌 편리성과 위생성을 이점으로 강조하



<그림 4> 神武天皇圖

며 대대적으로 계몽하였다.

한편, 개항이후 조선에서 처음 시행된 갑신 의제 개혁에서는 古制를 따르고 시운에 맞도록 하기 위해 서라는 필요성을 내세워 복식 간소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면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반대한 사람들의 논리는 爲政斥邪思想과 상하신분의 구별 관념으로 나타난다. 위정척사사상은 17세기 이후 형성된 조선중화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우리 복식이 明을 이어 내려오는 중화의 전통이라는 자부심으로 인하여 전혀 근거가 없는 서양오랑캐 및 서양과 같은 오랑캐가 된 일본과 비슷한 옷으로 바꿀 수 없다는 논리이다. 또한 상하신분의 구별은 전통적인 신분구조 사회에서 새로운 복식제도가 복식의 신분상징성을 상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대의견은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일본에서는 제도를 위협할 수 준까지는 아닌 반면에 조선에 있어서는 정권의 주체가 바뀔 때마다 수 차례 개혁을 반복하기에 이른다. 특히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 일본의 군대를 앞세우고 국왕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고 칙령을 반포하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 단발령이 내려지자 반제국주의라는 기치로 전국적인 저항운동이 의병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俄館으로부터 돌아온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이루어진 양복도입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고, 이로써 우리 나라도 서양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복식제도를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과 그의 반복이 되풀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주독립에 대해 열세가 되어 주권상실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이 시기의 복식제도 개혁을 통해 두 나라 모두 전통복식의 양복으로의 변환 자체를 이끌어내지만, 극단적으로 자기 문화를 비하시키는 관점을 보급시켰고 양복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고유복식은 일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전면적인 사회개혁 및 기존 신분체제의 붕괴를 통하여 서양복식을 수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조선은 서양과 서양화된 일본의 문화로 인해 기존 문화를 버릴 수 없다는 강한 문화자존주의와

서구 열강 및 淸·日의 각축으로 인해 복식개혁이 정치적 흐름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개혁과 번복을 거듭하였다.

참고문헌 및 미주

- 江馬務, 『日本結髮全史』, 동경, 京都: 立命館出版部, 1936
 - 『決定版 昭和史-昭和前史, 文明開化(幕末~明治18년)』, 毎日新聞社, 1984
 - 高柄翔, 『東아시아 文化史 論考』,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關根正直, 『服制の研究』, 동경: 古今書院, 1925
 - 『舊韓國官報』
 - 국사편찬위원회편, 『高宗時代史 1-6』, 1970
 - 국사편찬위원회편, 『大韓李年史 上·下』 禮紀 4290(1955)
 - 국사편찬위원회편, 『修信使記錄全』 (金綺秀 『修信使日記卷1』 『日東記遊』, 金弘集 『修信使日記卷 2』, 朴泳孝 『使和記略』), 1971
 - 國譯·原典 『CD-ROM 高宗純宗實錄』 서울 시스템 (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1998
 - 김미자, "개화기 문관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4
 - 김진식, 『한국양복100년사』 서울: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1990
 -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동양 禮와 서양 公法』, 서울: 나남출판사, 1997
 - 나가이 미치오·M. 우르타이 엮음, 서병국 옮김 『세계사의 흐름으로 본 명치유신-유럽화를 꿈꾼 섬나라』 서울: 교문사, 1994
 - 大阪洋服商同業組合, 『日本洋服沿革史』, 大阪: 大阪實業交館專屬印刷所, 1930
 - 藤井甚太郎 著, 『幕末明治過渡期の 風俗』, 일본풍속사강좌 제7권, 동경: 雄山閣, 1928-1929
 - 藤澤衛彦, 『明治風俗史』, 동경: 常磐印刷所, 1929
 - E.B. 비숍,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서울: 살림, 1994
 - 신문집성 명치편년사 편찬회, 『新聞集成 明治編年史』 동경: 東洋印刷 주식회사, 1934-1936
 - 岩波講座, 『日本通史』 제16권 近代1, 제17권 近代2' 安江良介 발행, 동경: 岩派書店, 1994
 - 劉香織, 『斷髮 東アジアの文化衝突』, 동경: 朝日新聞史, 1990
 - 유희경, 『韓國服飾文化史』 서울: 교문사, 1997
 -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서울: 一志社, 1983
 - 田中千代 『服飾事典』, 동경: 東京印書館, 1966
 -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서울: 一志社, 1998
 - 『朝鮮日報』 1972년 2월~4월 생활혁명 어제-오늘-내일을 엮는 長期시리즈 「세상달라졌다」
 - 피터 두오스, 金容德 譯, 『日本近代史』, 서울: 知識産業社
 - 黃玟, 김준 驛, 『梅泉野錄』, 서울: 교문사, 1994
 - 〈그림1〉 『日本洋服沿革史』 p.90
 - 〈그림2〉 『한국사진역사전』 한국사진사연구소, 1998.11, p.40
 - 〈그림3〉 「文明開化」 소장 〈開化人の 風俗〉 『明治風俗史』 p.251
 - 〈그림4〉 서현섭, 『일본인과 천황』 서울: 고려원, 1997, p.111
- 1)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동양 禮와 서양 公法』, 1997, p.73
 - 2) 김용구, 전게서, pp.79-85
 - 3)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1998, p.226
 - 4) 정옥자, 전게서, pp.211-212
 - 5) 고병익, 『東아시아 文化史 論考』, 1997, p.332
 - 6) 피터 두오스, 김용덕 역, 『日本近代史』, 1983, p.31
 - 7) 당시 서구사회에서 일반화된 문명국의 기준은 "국제법의 주체로서 자격을 가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최저표준이 되어 외국인이 상업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생명, 재산,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법칙 또는 그 이외의 제도를 정비 유지하고 있는가"의 문제였다. 岩波講座 『日本通史』 제17券 近代2, 論說 <<明治國家の制度と理念>> pp.113-148
 - 8) 김용구, 전게서 pp.49-51
 - 9) 岩波講座, 『日本通史』 제16券 近代1 通史 "1850-70年代の日本-維新變革" pp.3-64, 김용덕 의 『19세기 일본의 근대화』, 1996, pp.119-120.
 - 10) 岩波講座 『日本通史』 제17券 近代2 "明治國家の制度と理念" p.119
 - 11) 양철체제는 유길준의 『西遊見聞』 "방국의 권리" 편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조선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이와 같은 국제관계 속에 있게 된다. 김용구(1997), 전게서, p.231.
 - 12) 정옥자, 전게서, p.275.
 - 13) 양복착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효시는 安定4년(1857)에 鍋島藩에서 蘭學寮 수업생의 制服을 양복으로 제정한 것으로 筒袖를 허용한 것이다. 『日本洋服沿革史』, 1930, pp.22-23. 막부에서는 文久元年(1861) 양식군대에서 화란식 조련을 시작하면서 서양식 훈련을 받는 군인과 군함에 오르는 사람에 한하여 서양식 복장을 이용해도 괜찮다는 허가를 내리게 된다. 같은 책 pp.27-28.
 - 14) 藤井甚太郎 『幕末明治過渡期の風俗』, 1928-1929, pp.36-37
 - 15) 毎日新聞社, 『결정판 昭和史1, 昭和前史(幕末-明治18년)』, 昭]和59년 p.37
 - 16) 江馬務, 『日本結髮全史』, 昭和11년(1936), p.293.
 - 17) 劉香織 『斷髮 近代 東アジアの文化衝突』, 1990, pp.102-110.

- 18) 劉香織, 전계서, p.115.
- 19) 劉香織, 전계서, pp.125-126.
- 20) 「朕惟フニ風俗ナル者移換以テ時ノ宜シキニ從ヒ團體ナル者不拔以テ其勢ヲ制ス、今衣冠ノ制中古唐制ニ模倣セシヨリ流シテ軟弱ノ風ヨリ仰グ、神州武ヨリ以テ治スルヤ。固ヨリ久シ、天子親ラ之ガ天帥トナリ衆庶以テ其風ヨリ仰グ、神武創業神功征韓ノ如キ決シテ今日ノ風姿ニアラス、豈一日モ軟弱以テ天下ニ示スベケムヤ、朕今斷然其服制ヨリ改メ其風俗ヨリ一新シ、祖宗以來尙武ノ國體ヨリ立テント欲ス、汝近臣其レ朕ガ意ヨリ體セヨ」, 명치4년 9월 『新聞雜誌』12, 명치편년사1권 p.400
- 21) 「御布告書, 今般勅奏任官及非役有位大禮服並上一般通常ノ禮服別冊服章圖式ノ通被相定, 從來ノ衣冠ヨリ以祭服ト爲シ直垂袴衣上下等ハ總テ廢止被仰出候事 但新製ノ禮服所持無之內ハ禮服着用ノ節當分是迄ノ通直垂上下相用不苦候事」 명치5년 11월 12일 太政官達 제 339호, 關根正直, 『服制の研究』, 古今書院, 1925, p.267.
- 22) 關根正直, 전계서, pp.271-273.
- 23) 江馬務, 『日本結髮史』, 1976, p.171을 劉香織, 전계서 p.185에서 재인용.
- 24) 「지금 문명의 기운에 있어서 만국간 교류를 두터이 하는 이때에 이르러 영웅할거 시대의 폐습을 묵수하는 것은 해외의 조소를 받음이 당연한 것이다. 결연히 두발을 잘라 현재의 융성한 기운을 일으키자.」 (명치6년 2월 3일 『東京日日』명치편년사 2권 p.13) 「濱田縣에서 縣民회의를 통해 여러 문명의 정체를 설명 권유함에 근접한 음리의 남자는 散髮을 하기로」 (명치6년 2월 25일 『大阪新聞』명치편년사2권 p.15)
- 25) 『文明開化』初編을 藤澤衛彦, 『明治風俗史』, 常磐印刷所, 1929, pp.97-102에서 재인용.
- 26) 명치5년 11월 『新聞雜誌67』 「大阪에서는 斬髮布令을 들고 시민일동이 머리를 일시에 자르고 그로 인해 양품점에 있는 모자가 일시에 매진되었다.」 (명치편년사 1권 pp.506-507)
- 27) 『幕末明治過渡期の風俗』 pp.15-16.
- 28) 명치9년(1876) 3월 29일자 朝野新聞 「官令第38號 自今大禮服着用并二軍人及ビ警察官吏等制規アル服着用ノ節ヨリ除クノ外帶刀被禁候條, 此旨布告候事. 但違犯ノ者ハ其刀可取上事 太政大臣 三條實美」 명치편년사 2권 p.509
- 29) 藤澤衛彦, 전계서, p.334.
- 30) 近代의 洋裝(1998), 문화학원 복식박물관, p.53
- 31) 藤澤衛彦, 전계서, pp.396-398.
- 32) 이경자, 『한국복식사론』, 1983, p.227.
- 33) 고종실록 권33 고종32년 4월 19일 칙령 제81호 “警務使 以下 服制 裁可 頒布”.
- 34) 金綺秀(1877), 『日東記游』, 한국사료총서 제9 『修信使記錄』 全, p.69.
- 35) 고종실록 권17 고종 17년 8월 28일(甲子) 敕曰, 或有尙著舊服, 不改其俗者, 其中必有可觀矣, 弘集曰, 其中文士多, 頗爲可尙矣.
- 36) 「本月三日天長節ニ付, 於日比谷練兵場陸軍觀兵式ヨリ行ヒ我天皇陛下臨幸被爲在候ニ付, 閣下從事官ヨリ御同伴御來觀有之度被仰出候仍テ此段得貴意候, 敬具, 明治十五年十一月三日 宮内卿 德大寺實則, 朴泳孝 閣下 追テ同日午前八時四十分迄ニ同所へ御來着, 大禮服御着用可有之, 且當日雨天之節ハ小雨ニテモ該式不被爲行候此段申添候也. 宮内卿德大寺實則爰ニ皇上ノ旨ヨリ奉シ朝鮮國正使朴泳孝閣下ヨリ本月三日午前第十時四十分宮中ニ於テ天長節ノ祝宴ニ招請ス. 明治十五年十一月二日 大禮服着用」, 『使和記略』 고종19년(1882, 壬午) 9월 22일(양력 11월 2일), 같은 책, pp.229-230. 참고로 일본은 양력을, 조선은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낸 초청장에는 양력으로, 박영효가 보낸 답서에는 음력으로 날짜가 적혀 있다.
- 37) 「來ル十一月三日天長節ニ付霞ケ關外務卿官宅ニ於テ夜會相催候條午後九時ヨリ御來臨被下度致希望候也. 但小禮服, 明治十五年十月三十日 井上馨 同妻 大朝鮮特命全權公使 朴泳孝 閣下」, 『使和記略』, 고종19년 9월 20일(양력 10월 30일), p.222.
- 38) 『使和記略』, pp.223-229
- 39) “... 來ル十月三日我皇帝陛下御誕辰ニ付, 霞ケ關官舎ニ 於テ祝宴相設候間, 同日午後第六時御枉駕有之度希望候, 此段得貴意候... 明治十五年十月二十六日 外務卿 井上馨... 追テ大禮服御着用相成度候...” 음력 9월 15일 『使和記略』, pp.218-219.
- 40) 조선일보, 1972년 생활혁명 어제-오늘-내일을 엮는 長期시리즈 『世相 달라졌다』 제2집 服飾의 章 양복 17회 <최초의 紳士>편.
- 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민족문화 대 백과사전』, 1991, 개화정책, 신사유람단, 김옥균, 서광범, 유길준, 윤치호, 홍영식 편 참조.
- 42) 김옥균, 『甲申日錄』, 한국사상전집6 한국의 근대사상, 1981, p.39
- 43) 『使和記略』, p.231.
- 44) “...惟陸軍省, 片稱士官學校, 必須將其頭髮, 衣服, 與諸生徒, 悉從一切, 否則於授業上, 諸多不便...” 『使和記略』, p.264.
- 45) 明治15년(1882) 10월 28일 『自由新志』, 명치편년사 5권, p.169.
- 46) 이들중 일원이었던 서재필의 『回顧甲申政變』과 『서재필 자서전』을 참고.
- 47) 조선일보, 1972년 3월 15일 생활혁명 어제-오늘-내일을 엮는 長期시리즈 『世相 달라졌다』 제2집 服飾의 章 양복18회 <양복의 공인>편.
- 48) 고종실록 권21 고종 21년 윤5월 24일조, 고종실록 권

- 21 고종21년 6월 3일조.
- 49) 黃玼, 김준 譯, 『梅泉野錄』, 교문사, 1994, p.152.
- 50) 황현, 전계서, p.164.
- 51) 고종실록 권33 고종32년 6월 20일 군부대신 申箕善의 상소 중.
- 52) 황현, 전계서 p.337.
- 53) 명치28년(1895) 12월 26일 『日本』「25日 京城發 來一日國王、大院君、官吏、兵士は斷髮し 人民は自由にする事に内定せり。」명치편년사9권 p.341.
- 54) 『官報』 제204호, 건양원년 1월 4일 土曜
- 55) 황현, 전계서 p.370.
- 56) 金允植, 국사편찬위원회편 『續陰晴史 下』 卷八, 檀紀 4293(1955), p.387.
- 57) E.B. 비숍, 이인화역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p.419.
- 58) 『구한국 외교문서』제5권 德案 1583호 건양 원년 2월 9일 1584호 건양 원년 2월 9일, 『外記』 건양 원년 2월 9일을 『고종시대사』건양 원년 2월 9일에서 재인용.
- 59) "...상투를 자르는 경우와 같이 어느 누구도 의복제도와 갖에 대해 강요할 수 없을 것이다..." 비숍, 전계서, pp.421-422, 황현, 전계서 p.379.
- 60) 명치29년(1896) 3월 1일 『國民』"韓國王 又 結髮" 명치편년사 9권 p.385.
- 61) 비숍, 전계서 p.420.
- 62) 고종시대사 권6, 1907년 9월 25일, 매천야록 隆熙元年 pp.730-740에는 단발한 사람이 의병에게 살해당하는 기사가 나온다.
- 63) 고종실록 권34 고종33년(건양 원년) 9월 24일.
- 64) 비숍, 전계서, p.434.
- 65) 고종실록 권39 고종36년(광무3년) 8월 3일.
- 66) 고종실록 권39 고종36년(광무3년) 6월 22일.
- 67) 고종실록 권40 고종37년 4월 17일, 『勅令存案』 권4 칙령14호 「文官服裝規則」 칙령 제15호 「文官大禮服制式」.
- 68) 유희경(1997), 『한국복식문화사』, p.414.
- 69) 河鱈實英, 『日本服飾史辭典』, 1969, p.185.
- 70) 김미자, "開化期の 文官服에 對한 研究", 服飾 창간호, 1977, p.78.
- 71) 김미자, 전계서, p.81.